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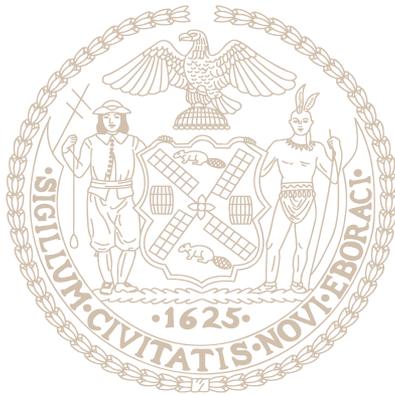
MARK LEVINE
NEW YORK CITY COMPTROLLER

이민 근로자 안내서

(Korean)



1 Centre Street
New York, NY 10007
(212) 669-3916
www.comptroller.nyc.gov
@NYCComptroller



근로자 권리국 국장의 인사말

뉴욕시 감사관실 노동법 및 근로자 권리국은 ‘이민자 근로자 가이드’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에서 가장 심각한 권리 침해를 겪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주장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민자 근로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은 주·연방·지방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노동 보호 제도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아웃리치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 파트너들과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협력하여,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자원과 지원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근로자 가이드(Immigrant Resource Guide) 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한데 모은 자료입니다.

이 가이드는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직장 내 권리 정보와 함께, 이민자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단체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 근로자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이 그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도구와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대하며,



클라우디아 엔리케즈
근로자 권리국 국장

목차

근로자 권리국 국장의 인사말	1
이민세관단속국 (ICE) 과의 접촉 시 알아야 할 권리.....	3
고용주 위반 대시보드: 내 고용주는 법을 위반했나요?	6
노동자 보호 제도	7
최저임금	8
현행 임금 (적정 임금).....	10
근무시간 기록표	11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12
지원 단체 목록.....	15

면책 조항

본 가이드에 포함된 정보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자문으로 사용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드는 이민자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이자 간략한 안내서로, 순수히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과 접촉할 때 알아야 할 권리

직장 내 권리 외에도, 미등록 이민자 근로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 (ICE) 또는 다른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이 가정이나 직장에 방문할 경우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 기관들은 이민세관단속국 (ICE) 과 협력하나요?

뉴욕시의 현행 지방 법률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 (NYPD) 을 포함한 시 정부 기관들은 제한된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ICE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많은 서비스와 자원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은 언제 내 직장에 들어올 수 있나요?

ICE 요원은 영장 없이도 직장의 공공 구역 (public area) 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사적 공간 (private area) 에 들어오려면 법원 명령 영장 (판사나 치안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 이나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사적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휴게실이나 창고 등이 해당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직장에서 나에게 접근하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1. ICE 요원과 접촉할 때,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2. ICE 요원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the search.) ”라고 말하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만약 ICE 요원이 당신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 한다면,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자녀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실을 요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4. 이민세관단속국 (ICE) 과의 모든 대화나 심문에서, 본인의 모국어로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영장을 제시받지 않는 한 문을 열 의무는 없습니다. 문을 열더라도, 그것이 ICE 요원에게 집 안으로 들어올 허락을 준 것은 아닙니다. 문을 닫은 채로 대화할 수 있으며, 사법 영장 (판사나 치안판사가 서명한 수색 또는 체포 영장) 이 없는 경우 요원을 집 안에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영장에는 집 주소 및 수색 또는 체포 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요원이 문 앞에 있을 때, 본인 또는 가족 중 지정된 사람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이 이민 단속 요원입니까?
 - 왜 우리 집에 왔습니까?
 - 창문이나 도어 스킵을 통해 배지나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문 아래로 밀어 넣거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원이 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는 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이동 중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나를 멈춰 세웠을 때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1.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달아나거나, 언쟁하거나,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손은 항상 요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2.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십시오.
3. 출생지, 미국 시민 여부, 미국에 입국한 방법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자동차 안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승자는 “제가 떠나도 되나요?”라고 물을 수 있으며, 요원이 “네.”라고 답하면 침착하게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내 권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뉴욕시 이민자 업무국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에서 제공하는 무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시정부 지원 법률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전화: 800-354-0365 또는 311에 전화한 후 “Immigration Legal”이라고 말하십시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이민자 업무국 웹사이트의 “Know Your Rights: Federal Immigration Enforcement”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¹

¹ <https://www.nyc.gov/site/immigrants/legal-resources/know-your-rights-federal-immigration-enforcement-ice.page> 을 확인하세요



고용주 위반 대시보드: 내 고용주는 법을 위반했나요?

뉴욕시 감사관실의 고용주 위반 대시보드 (Employer Violations Dashboard) 는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연방, 주, 시 정부 기관의 노동법 집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초의 투명성과 책임성 도구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하의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 보호 법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 불법적 간섭 없는 근로자 단결 및 노조 결성의 자유
-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
-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 앱 기반 음식 배달 근로자를 위한 최소 임금 보장
- 공공사업 근로자의 현행 임금 (적정 임금)

2020년 이후 뉴욕시 내 연방·주·시 노동법 위반 기록을 조회하려면,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뉴욕시 감사관실의 고용주 위반 대시보드 (Employer Violations Dashboard)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comptroller.nyc.gov/employer-violations> QR 코드를 스캔하면 '고용주 위반 대시보드'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노동자 보호 제도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자 보호 제도를 갖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동법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전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규정 외에도, 뉴욕시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앱 기반 음식 배달 근로자는 최소 임금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뉴욕시의 노동자 보호 제도는 「근로자 권리장전 (Workers' Bill of Rights)」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 가이드는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 기관이 집행하는 모든 노동자 보호 법률을 한곳에 모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 권리장전」은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DCWP,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²

² <https://www.nyc.gov/site/dca/workers/workersrights/know-your-worker-rights.page> 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뉴욕주 법에 따라 정해지며, 뉴욕주 노동부 (NYS DOL,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가 이를 집행합니다.

2025년: 시간당 \$16.50

2026년: 시간당 \$17.00

이 임금 기준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로는 임금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의 정규직 (full-time) 으로 일하던, 40시간 미만의 시간제 (part-time) 로 일하던 상관없이, 두 경우 모두 근로자는 최소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 분야에 따라 최저임금이 더 낮거나 높게 적용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노동부 (NYS DOL,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³ 웹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노동부에서는 각 산업별 시간당 임금 수준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⁴ 도구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비급여직 (non-salaried)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를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으로 지급받습니다.⁵ 예를 들어, 시간당 \$17.00를 받는 근로자는 초과근무 시간당 \$25.50 ($\17.00×1.5) 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채용 시 임금 명세서 (고용 및 급여 고지서)⁶
- 매 급여일마다 상세한 임금 명세서 (급여 명세표, pay stub)⁷

최저임금 적용 예시

주니 (Zuni) 는 잭슨하이츠의 한 작은 네일숍에서 일하기 시작한 신입 네일 기술자입니다. 그녀는 주당 25시간 근무합니다. 고용주는 손님이 있을 때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2주 동안 주니는 매주 25시간 동안 가게에 머물며

³ <https://dol.ny.gov/minimum-wage-0> 을 확인하세요.

⁴ <https://ux.labor.ny.gov/minimum-wage-lookup/> 을 확인하세요.

⁵ <https://es.ag.ny.gov/resources/individuals/workers-rights/wages-pay>.

⁶ <https://dol.ny.gov/notice-pay-rate> 을 확인하세요.

⁷ <https://dol.ny.gov/system/files/documents/2024/12/ls49.pdf> 을 확인하세요.

다른 기술자를 도왔고, 가게를 청소하고, 고용주를 위해 심부름을 했으며, 총 20 명의 손님을 서비스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주니에게 \$330 (= \$16.50 × 20 명의 손님) 만 지급했습니다. **주니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 아닙니다. 주니는 법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주니가 손님을 응대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5 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주니는 손님 수와 상관없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시간당 \$16.5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니는 매주 25시간씩 2주 동안 일했기 때문에, 총 50시간 × \$16.50 = \$825.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된다면, 뉴욕주 노동부 (NYS DOL,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complaint)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노동부 웹사이트 <https://dol.ny.gov> 를 방문하거나 (888) 469-7365 번으로 문의하십시오.⁸

⁸ <https://dol.ny.gov/unpaidwithheld-wages-and-wage-supplements> 을 확인하세요.

적정 임금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⁹ 이란, 공공 자금이 투입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을 의미합니다.

해당되는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공공사업 현장에서의 건설 작업 — 시정부 예산으로 건설되는 학교, 도로, 공원 등의 공사
- 건물 서비스 업무 — 시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었거나 특정 세금 혜택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도어맨 등
- 시정부 계약에 포함된 특정 서비스 업무 — 음식 서비스, 임시 인력 서비스 등
- 시정부와 계약된 노숙자 쉼터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 업무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및 복리후생 수준은 뉴욕시 감사관실에서 정하고 집행합니다. 이 임금은 민간 부문 노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학교 건설이나 특정 주 세금 혜택을 받는 건물의 유지·보수 작업 등 시정부와 계약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현행 임금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과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0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적정 임금 기준 외에도, 법은 근로자에게 추가 복리후생비 (supplemental benefit) 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복리후생비는 연금 (pension),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과 같은 실제 복리후생 형태로 제공되거나, 현금 수당 (cash allowance) 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뉴욕시 감사관실의 적정 임금표 (Prevailing Wage Schedule)⁹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적정 임금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뉴욕시 감사관실 (Office of the New York City Comptroller) 의 온라인 신고서 (complaint form)¹⁰ 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관실로 전화하십시오: (212) 669-4443.

⁹ <https://comptroller.nyc.gov/services/for-the-public/workers-rights/wage-schedules/> 을 확인하세요.

¹⁰ <https://comptroller.nyc.gov/services/for-the-public/workers-rights/file-a-complaint/> 을 확인하세요.

유의하세요! 임금이 도용 (wage theft) 당했다고 의심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뉴욕시 감사관실 노동법국 (Bureau of Labor Law) 은 신고일로부터 최대 2년 전까지의 기간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는 2023년 11월까지의 임금 위반 사례만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위반 사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정 임금 및 근로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감사관실 (Office of the New York City Comptroller)¹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표

임금 도용 (wage theft) 이나 기타 직장 내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고용주의 정보를 기록하고 자신의 근무 시간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 기록표에 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과 받은 임금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한 모든 시간이 정확히 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감독자나 매니저가 실제 회사나 기관, 사업주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청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연락처 정보를 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

차량 번호판 (license plate number) 을 적어둘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를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근무지가 여러 곳으로 이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무한 현장의 주소나 위치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고용주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주요 건물 (랜드마크) 을 촬영한 사진을 남겨두면 나중에 근무 장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 (US DO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에서는 근로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근무시간 기록 애플리케이션 (Timesheet App)¹² 을 제공합니다.

¹¹ <https://comptroller.nyc.gov/services/for-the-public/workers-rights/overview/> 을 확인하세요.

¹² <https://www.dol.gov/agencies/whd/timesheet-app> 을 확인하세요.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의 권리

연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위해 직장에서 함께 조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 (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은 근로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청원서에 서명하며, 노조를 결성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활동을 보호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임금 인상, 더 안전한 근무 환경, 노조를 협상 대표로 돌지 여부 결정, 단체협약 교섭 참여 등 집단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주와 노조는 전국노동관계법 (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에서 근로자 다수가 노조 설립에 찬성하여 노조가 인정된 경우, 고용주와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 조건과 고용 조건에 대해 성실히 협상 (good faith bargaining) 해야 하며, 이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조를 결성하는 절차를 시작하려면, 노조 조직가 (union organizer) 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단체 목록 (Directory) 섹션에 나열된 단체를 통해 노조 조직가와 연결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 조직가는 여러분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이끕니다. 이는 선거 (election) 를 통해서나, 혹은 자발적 인정을 통한 방식 (voluntary recognition) 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와 노조는 고용주와 함께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조 결성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¹³. 일반 문의는 (844) 762-6572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노조 결성의 기본 단계 (Basic Steps to Forming a Union)” 안내서 (flyer) 및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기타 자료 (brochures) 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¹⁴

전국노동관계법 (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에서 보장하는 노조 결성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 지역 사무소 (Regional Office) 에 부당노동행위 (ULP, Unfair Labor Practice)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¹³ <https://www.nlr.gov/guidance/key-reference-materials/steps-for-filing-a-petition> 을 확인하세요.

¹⁴ 다국어로 된 전단지를 다운로드하려면,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있는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 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접근하고자 하는 브로셔를 선택하세요. <https://www.nlr.gov/news-publications/publications/brochures> 을 확인하세요

- **제2지역 사무소 (Regional Office 02) – 맨해튼 (Manhattan) 및 브롱크스 (Bronx) 관할**

26 Federal Plaza, Ste 41-120
New York, NY 10278-0104
Tel: (212) 264-0300
Fax: (212) 264-2450
8:45am - 5:15pm ET

- **제29지역 사무소 (Regional Office 29) – 퀸즈 (Queens), 브루클린 (Brooklyn), 스타튼아일랜드 (Staten Island) 관할**

One Metrotech Center, 20th Floor
Suite 2000, Brooklyn, NY 11201-3948
Tel: (718) 330-7713
Fax: (718) 330-7579
9:00am - 5:30pm ET

노조 조직 기본 단계

전국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노조를 조직할 권리가 있는데, 자발적 인정과 NLRB 노조 선거를 통한 것이 가장 흔한 결과입니다.

자발적 인정을 통한 노조 조직 기본 단계



1

노조 조직책에 연락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조를
시작하십시오.

2

통로 근로자 다수의 서명을 노조
승인 카드에 받으십시오.

3

회사에게 자발적 인정을
요청하십시오.

4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면, 교섭을
시작하십시오.

5

회사가 노조 인정을 거부하면,
NLRB에 선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정을 위해 파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NLRB 선거를 통한 노조 조직 기본 단계



1

노조 조직책에
연락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조를 시작하십시오.

2

적어도 통로 근로자
30%의 서명을 노조 승인
카드에 받으십시오.

3

NLRB에 선거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4

노조가 50% + 1의 표로
선거에서 이기면, 회사는
근무 조건에 대해 선의의
협상을 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면 가장 가까운 NLRB 지역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go.usa.gov/xt3MU



Adhikaar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아디카 (Adhikaar)의 변화 이론은 서비스 제공, 옹호,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2005년 설립된 아디카는 네팔어 사용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정의 운동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Adhikaar”(아디카: 네팔어로 “권리”)는 여성 주도의 커뮤니티 및 노동자 센터로, 네팔어 사용 공동체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노동자와 당사자들이 인권과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조직화 활동을 펼칩니다. 아디카의 사명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동체 리더십을 육성하며, 모두의 존엄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디카는 네팔어 사용 공동체를 네팔, 부탄, 인도, 버마, 티베트 출신으로 네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 71-07 Woodside Avenue, Woodside, NY 11377

☎ (718) 937-1117

✉ info@adhikaar.org

🔗 <https://adhikaar.org/#about>

✂ @adhikaar

📞 전화, 이메일

African Advisory Council (AAC)

브롱크스 구청의 아프리카 자문 위원회 (AAC) 는 아프리카 이민자 커뮤니티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851 Grand Concourse, Bronx, NY 10451

 (347) 313-5568

 Sidikidonzo2@yahoo.com

 이메일, 문자 메시지

African Communities Together (ACT)

African Communities Together (ACT) 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시민권, 기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ACT 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ACT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주요 서비스와 연결하고,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이끌어갑니다.

 127 W 127th Street, Suite 221, New York, NY 10027

 (347) 746-2281

 info@africans.us

 <https://africans.us/>

 <https://www.threads.net/@africansus>

 @AfricansUS

 이메일, 전화, 방문

African Services Committee

African Services Committee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이민자, 난민, 망명자를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조직입니다.

📍 429 W 127th Street 3rd Floor, New York, NY 10027

☎ (917) 246-2110

✉ health@africanservices.org

🔗 <https://africanservices.org/>

📱 이메일, 전화, WhatsApp, 방문

Alliance of South Asian American Labor (ASAAL)

ASAAL (남아시아계 미국 노동자 연합)은 남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직장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함, 존중, 존엄성, 그리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ASAAL은 남아시아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봉사와 노력, 헌신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ASAAL은 남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다른 커뮤니티들처럼 성장하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 88-74 195th Street Hollis, NY 11423

☎ (917) 558-0966

✉ Asaal08@gmail.com

🔗 www.ASAAL.org

✂ @asaal08

📱 이메일, 문자 메시지

APNA Brooklyn Community Center

APNA Brooklyn Community Center는 커뮤니티 교육, 참여, 그리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소득층, 고령자, 언어 장벽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NA는 시와 주 기관, 지역 CBO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6 Neptune Avenue, 2nd Floor, Brooklyn, NY 11235

 (718) 684-8807

 info@apnabrooklyn.com

 www.apnabrooklyn.com
<https://www.facebook.com/Apnacenter/>

 @Brooklynapna

 전화, 이메일, 방문

Catholic Migration Services (CMS)

Catholic Migration Services는 197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저소득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세입자 조직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법률 교육을 제공합니다. CMS는 인종, 종교, 민족, 출신 국가 또는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47-01 Queens Blvd., Suite 203, Sunnyside, NY 11104

 (347) 472-3500

 www.catholicmigration.org

 @CMSBQ

 전화

Carroll Gardens Association

Carroll Gardens Association은 브루클린 남서부 지역의 모든 소득계층 주민과 가족들이 함께 살고, 일하며,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센터입니다. Carroll Gardens Association, Inc.는 이를 위해 저렴한 주택의 보존 및 개발, 양질의 주택 관리 실천, 소상공인 경제발전 촉진, 그리고 사회서비스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 Columbia Street, Brooklyn, NY 11231

 (718) 243-9301

 domesticworkers@cganyc.org

 <https://www.carrollgardensassociation.com/>

 @CGA_NPC

 이메일, 전화, 방문

Asian American Federation (AAF)

AAF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영향력 확대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옹호 단체입니다. AAF는 연구, 정책 옹호, 공공 인식 제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 지원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20 Wall Street, New York, NY 10005

 (212) 344-5878

 info@aafederation.org

 <https://www.aafederation.org/about-us/>

 @AAFederation

 이메일

Centro de Recursos Educativos para Adultos (CREA)

CREA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성인 이민자들의 교육적 필요를 다룹니다. CREA는 시 전역에서 2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원어로 교육을 개선하고 영어를 제2언어로 익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후속 교육 지원도 제공합니다. CREA는 리더십 개발, 개인 상담, 사회 서비스 연계 및 또래 지원도 제공합니다.

 158 East 115th Street, New York, NY 10029

 (929) 270-7741

 info@creany.org

 <https://www.creany.org/>

 이메일, 전화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의 미션은 중국계 미국인, 이민자 및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권한 강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Main Office:  45 Suffolk Street, New York, NY 10002

 (212) 941-0920

Brooklyn  4101 8th Avenue, 4th Floor, Brooklyn, NY 11232

Community  (718) 492-0409

Center:

Queens  133-14 41st Avenue, Flushing, NY 11355

Community  (718) 358-8899

Center:

 info@cpc-nyc.org

 <https://cpc-nyc.org/>

 @cpc_nyc

 전화

Consortium for Worker's Education

노동자 교육 컨소시엄 (CWE) 은 교육, 직업훈련, 보육,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통해 뉴욕시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CWE는 뉴욕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인력개발 부분으로서 매년 40개의 노동조합과 그 지부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의 52개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05 7th Ave 4th floor, New York, NY 10001

 (212) 647-1900

 info@cwe.org

 <https://www.cwenet.net/>

 @CWENYC

 이메일

Construction and General Building Laborers Local 79

Construction and General Building Laborers' Local 79는 1996년에 10 개의 작은 노동자 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현재 10,000명 이상의 적극적인 회원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큰 건설 노동자 조합입니다.

 131 West 33rd Street, New York, NY 10001

 (347) 344-8577

 agonzalez@local79.org

 <https://www.local79.org/>

 <https://www.threads.net/@laborers79>

 @local79nyc

 문자 메시지, 전화, 이메일

Damayan Migrant Workers Association

Damayan Migrant Workers Association은 필리핀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와 인권을 증진하며, 사회정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단체입니다.

 406 West 40th Street 3rd floor, New York, NY 10018

 (212) 564-6057

 contact@damayanmigrants.org

 www.damayanmigrants.org

 @DamayanMigrants

 전화, 방문, 음성 메시지, 이메일

DRUM - Desis Rising Up & Moving

DRUM은 저임금 남아시아 및 인도 카리브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정책 변화, 옹호,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2-18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NY 11372

 (718) 205-3036

 contact@damayanmigrants.org

 www.drumnyc.org

 @desisrisingup

 전화

La Colmena

La Colmena는 Staten Island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가사 노동자 및 기타 저임금 이민자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화, 교육, 문화, 공평한 경제 발전을 통해 활동하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조직입니다.

 774 Port Richmond Ave, New York, NY 10302

 (718) 442-7700

 info@lacolmenanyc.org

 <https://www.lacolmenanyc.org/>

 @lacolmenanyc

 이메일, 방문

Educational Alliance (EA)

Educational Alliance는 1889년에 설립된 뉴욕시의 원조 정착지로, 현재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사회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97 East Broadway, New York, NY 10002

 (646) 395-4246

 resourcecenter@edalliance.org

 <https://edalliance.org/our-impact-2/asylum-seekers/>

 @EdAlliance

 전화, 방문

Highway, Road & Street Construction, Laborers' Local Union 1010

Laborers' Local 1010은 1937년에 창설된 도로, 고속도로 및 기타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현재 2,7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720 Whitestone Expressway, Suite 200, Whitestone, NY 11357
-  (718) 886-3310
-  erodriguez@local1010.org
-  <https://www.laborerslocal1010.com/>
-  @LIUNA1010
-  이메일, 전화

The Interfaith Center of New York (ICNY)

ICNY는 27년 동안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어 사회 정의, 이민 및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  475 Riverside Drive, Suite 540, New York, NY 10115
-  (212) 870-3510
-  info@interfaithcenter.org
-  <https://interfaithcenter.org/>
-  @ICNY
-  전화, 이메일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 Inc. (KCS)

KCS는 한국 이민자들이 경제적, 건강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3-05 32 Ave, Queens, NY 11361

 (718) 939-6137

 main@kcsny.org

 <https://kcsny.org/>

 @kcsny

 이메일, 문자 메시지

Laundry Workers Center

Laundry Workers Center는 저임금 이민자 노동자들의 생활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화하는 풀뿌리 비영리 단체입니다.

 42 Broadway, Suite 12-114, New York, NY 10004

 (866) 761-3207

 laundryworkerscenter@gmail.com

 www.lwcu.org

 @LWC_workers

 이메일, 전화, 페이스북 DM

Legal Aid Society

Legal Aid Society는 저임금 뉴욕 주민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199 Water Street, New York, NY 10038

 (888) 663-6880

 <https://legalaidnyc.org/what-we-do/upholding-worker-rights/>

 <https://www.threads.net/@legalaidnyc>

 @LegalAidNYC

 전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Make the Road New York

Make the Road New York은 이민 신분,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301 Grove Street, Brooklyn, NY 11237

 (718) 418-7690

 www.maketheroadny.org

 @MaketheRoadNY

 <https://www.instagram.com/maketheroadny/>

 전화, 방문

Masa

Masa는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원주민 사람들을 위한 리더러시, 리더십 및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주도의 통합 모델을 통해 가족 전체와 함께 활동합니다.

📍 2770 Third Ave, 1st Floor, Bronx, NY 10455

☎ (646) 481-5890

✉ info@masany.org

🔗 www.masany.org

✂ @masanyorg

📠 이메일, 전화, 음성 메시지, 방문

Mexican Coalition for the Empowerment of Youth and Families

이 단체는 뉴욕에서 18,000명 이상의 이민자 및 필수 노동자 가정을 지원하며, 라티노 및 멕시코계 미국인의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통합을 돕습니다.

📍 371 E 150th Street, Bronx, NY 10455

☎ (917) 600-1644

✉ info@coalicionmexicana.org

🔗 https://coalicionmexicana.org/

✂ @CoalicionMex

📠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방문, 전화, WhatsApp

Mixteca Organization

Mixteca Organization은 2000년에 설립되어 브루클린에서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 커뮤니티의 건강, 교육, 사회적 및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45 23rd Street, 2nd Floor, Brooklyn, NY 11215

 (718) 965-4795

 info@mixteca.org

 <https://www.mixteca.org/>

 @MixtecaOrg

 전화, 방문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전국 가사노동자 연합 뉴욕지부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 NY Chapter) 는 조직화, 스토리텔링, 직업역량 강화, 리더십 개발을 통해 뉴욕의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내고 옹호합니다. 이 단체는 “Know Your Rights (권리 알기)” 교육, 임금 체불 피해자 지원, 리더십 훈련 및 직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인종·다언어 구성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뉴욕의 흑인 가사노동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We Dream in Black (WeDiB)” 지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45 Broadway, New York, NY 10006

 (646) 360-5806

 info@domesticworkers.org

 <https://www.domesticworkers.org/>

 @domesticworkers

 전화, 이메일

New York Communities for Change

NYCC는 이웃들을 결집시켜 커뮤니티 권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행동, 입법 옹호, 커뮤니티 조직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470 Vanderbilt, Brooklyn, NY 11238

☎ (347) 410-6919

✉ info@nycommunities.org

🔗 www.nycommunities.org

✂ @nychange

🗺 이메일, 전화, 방문

NICE - New Immigrant Community Empowerment

NICE는 노동자 착취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조직화합니다.

📍 71-29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NY 11372

☎ (718) 205-1687

✉ info@nynice.org

🔗 https://www.nynice.org/

✂ @NICE4Workers

🗺 이메일, 전화, 방문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NYIC는 이민자와 뉴욕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법률과 정책을 이끌어왔으며, 주 전역에서 커뮤니티 기반 정책을 추진합니다.

 131 W 33rd St, New York, NY 10001

 (212) 627-2227

 info@nyic.org

 <https://www.nyic.org/about-us/>

 <https://www.threads.net/@thenyic>

 @thenyic

 이메일, 전화

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이 단체는 39년 동안 이민자 교육, 직업 훈련, 정신 건강 및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이민자들을 지원해왔습니다.

 5030 Broadway, Suite 639, New York, NY 10034

 (212) 781-0355

 info@nmcir.org

 <https://nmcir.org>

 @NMCIR

 이메일

NYCOSH - 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YCOSH는 직장 내 건강과 안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훈련 및 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14 Wall Street, Ste 5A, New York, NY 10005

 (212) 227-6440

 <https://nycosh.org/>

 @NYCOSH

 전화

Retail Action Project

Retail Action Project는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노동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직업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70 Seventh Ave, Suite 501, New York, NY 10001

 (646) 490-5925

 info@retailactionproject.org

 <https://www.retailactionproject.org/>

 @RetailAction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South Bronx United, Inc.

South Bronx United는 축구를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며 학업 지원, 대학 준비, 멘토링, 노동력 개발 및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14 River Ave, Bronx, NY 10451

 (718) 404-9281

 info@southbronxunited.org

 <https://southbronxunited.org/>

 <https://www.threads.net/@southbronxunited>

 @SBronxUnited

 이메일, 전화

Street Vendor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SVP는 길거리 상인들이 규정과 법을 배우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0 Rector Street, 9th Floor, New York, NY 10006

 (646) 602-5679

 svp@urbanjustice.org

 <https://www.streetvendor.org/>

 @vendorpower

 전화, 이메일, 음성 메시지

Sunnyside Community Services

SCS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3-31 39th Street, Sunnyside, NY 11104

☎ (718) 684-6173

✉ relief@scsny.org

🔗 www.scsny.org

🌐 <https://www.threads.net/@scs4ny>

✂ @scs4ny

📧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WhatsApp

Transnational Villages Network / Red de Pueblos Trasnacionales

Red de Pueblos Trasnacionales는 멕시코의 농촌 및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이민자들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로,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 362 E 146th St, Bronx, NY 10455

☎ (347) 269-5812

📧 이메일

Trinity Church Wall Street

Trinity Church는 뉴욕의 역사적인 교회로, 교회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  76 Trinity Place, New York, NY 11230
-  (917) 594-6300
-  communityimpact@trinitywallstreet.org
-  <https://trinitywallstreet.org/>
-  @TrinityWallSt
-  전화

Worker's Justice Project (WJP)

WJP는 저임금 이민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건설, 가사 청소 및 앱 기반 배달 산업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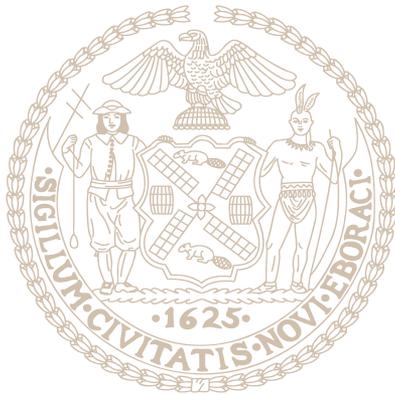
- Main Office:**  365 Broadway, Brooklyn, NY 11211
 (347) 889-6340
- Sunset Park Office:**  4112 4th Ave, Brooklyn, NY 11232
 (347) 422-0667

-  contactus@workersjustice.org
-  <https://www.workersjustice.org/>
-  <https://www.threads.net/@workersjusticeproject>
-  @workersjusticep
-  전화, 방문

이 가이드의 온라인 버전과 더 많은 근로자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comptroller.nyc.gov/
immigrant-workers-resource](https://comptroller.nyc.gov/immigrant-workers-resource)







MARK LEVINE
NEW YORK CITY COMPTROLLER

1 Centre Street, New York, NY 10007
(212) 669-3916
www.comptroller.nyc.gov
@NYCComptroller

[comptroller.nyc.gov/
immigrant-workers-resource](http://comptroller.nyc.gov/immigrant-workers-resource)

